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3년도 단체협약서

2014. 3. 17.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3년도 단체협약서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자치법규의 제.개정】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 운영에 대하여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회의
3.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신규직원 연수(2시간 이상) 및 전문교육 개설(가급적)시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교과목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④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⑤ 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시설편의 제공】① 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도한다.

제8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교육감은 경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
5. 각급 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0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제11조【홍보활동보장】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2조【조직.인력 적정배분】①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추도록 노력한다.

⑤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

⑥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⑦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행정실을 확대(학사 및 재정)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 쳐우 개선】①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을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이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④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년 2회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⑤교육감은 학교장 부재시 징수 및 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회계관련 전결위임규정)

제14조【각급학교 근무시간】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교육감은 정기 인사 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정기인사(1월,7월)시 7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 개요를 예고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18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경북교육상에 교육행정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제19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①교육감은 근무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업무 전담팀을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조합은 노동조건개선 및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원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실무요원 선발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제20조【도교육청 근무자 기준 개선】교육감은 도교육청 근무자를 선발할 때 학교근무 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도서관 전담인력 확보】①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공공도서관 분관 근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인력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할 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2조【지방공무원 처우 개선】①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일반직 전환시험 등으로 상위직급 과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되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④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권장 한다.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국외연수 확대 등】①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제26조【보직관리규정 정비】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27조【수당 신설 등】교육감은 학교에서 정부 시책사업 및 각종 연구·시범 학교 등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 규정 개정시 검토한다.

제5장 단체교섭

제28조【합의서 작성】①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9조【단체협약 이행】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반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②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0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교육감

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1조【보충협약 기타】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조건

제32조【대체인력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3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 설치하도록 한다.

제34조【업무대행】 ① 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방과 후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시간외수당)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문제 해결 방안(예비기사 확보,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노력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제35조【당직실 근무환경 등】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당직수당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③교육감은 당직을 할 경우 다음 날 반일휴무가 아닌 종일휴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36조【공무원 피복】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2. 조리사(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제37조【협의회 개최】①교육감은 제5조제2항3호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분기별로 개최하며,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

②노사협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를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

제38조【근무환경 개선】①교육감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급적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모든 급식실에 냉온풍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④교육감은 교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제39조【직원 동원 최소화】①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학기초 연수 및 각종행사 개최를 최소화 하며 지방공무원의 참석을 강요 하지 않는다.

제40조【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제7장 교육재정

제41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42조【예산집행의 적정성】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43조【예산의 합리적 편성】예산의 편성은 즉흥적이거나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44조【육아시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민간경력 인정】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 인정 추진에 있어서 행정보조, 과학보조 등의 경력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47조【맞춤형 복지비 인상】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자체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한다.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48조【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①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교원업무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업무 전반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을 증원되도록 노력한다.

④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중·고 병설학교의 경우 교무실과 마찬가지로 행정실도 중·고별로 분리 설치하여 맞춤형 학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 점검, 유해업소 점검 등 보건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건직공무원의 충원 노력을 통해 보건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⑦ 교육감은 5급 학교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행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과장급 보직이 2개 이상인 지역은 선임 과장직급 및 선임 담당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제49조【방화관리자 업무 등】 교육감은 1인 행정실장 배치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0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 공사 업무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제를 활성화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전담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시설직공무원의 연차적 충원·배치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실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제51조【학교시설물 관리】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2조【감사방법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종합감사를 면제한다.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4조【승진제도개선 등】 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심사방법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예고(공개)한다.

② 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퇴직예정자 현황 등)를 공개한다.

제55조【조리종사원 인력배치 기준 변경 등】①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이 이루 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적정히 운영하고 위생 점검 시 현실에 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학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6조【호봉상한제 폐지】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57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제58조【초.중등교육법 개정】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되도록 노력한다.

제59조【도의회 서류제출】① 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 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

제60조【병설유치원 전담인력 확충】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방법)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
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
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014년 3월 17일

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영우

김종기